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 - 제3차 본회의 -

2019. 7. 2.(화)
의사팀장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보고

○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¹⁾ 및 제11조 제2항²⁾ 규정에 따라 보고

위원회명	직위	교섭단체	의원명	선임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명훈	2019. 6. 7.
	간사	자유한국당	윤석진	

2.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

○ 의회운영위원회 : 5건(원안가결 2, 수정가결 3건)

소관	의 안 명	심사결과
의회운영 위원회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4. 2018 회계연도 결산	원안 가결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 가결

○ 기획행정위원회 : 11건(원안가결 7, 수정가결 3, 보류 1건)

소관	의 안 명	심사결과
	1.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부대의견)
	2.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1)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2)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소관	의안명	심사결과
기획행정위원회	3.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대의견)
	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부대의견)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보류
	8.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부대의견)
	9. 2018 회계연도 결산	원안가결
	10.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원안가결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문화복지위원회 : 17건(원안가결 13, 수정가결 4건)

소관	의안명	심사결과
문화복지위원회	1.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7.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8. 안산시 공공청사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9.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원안가결
	11.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부대의견)
	12.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부대의견)
	13.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반영요청(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원안가결 (의견제시)
	14. 2018 회계연도 결산	원안가결 (시정요구)

소관	의 안 명	심사결과
	15.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원안가결 (시정요구)
	16.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1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도시환경위원회 : 9건(원안가결 6, 수정가결 3건)

소관	의 안 명	심사결과
기획행정 위원회	1.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3.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4.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부대의견)
	5.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부대의견)
	6. 2018 회계연도 결산	원안가결 (시정요구)
	7.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원안가결
	8.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시정요구)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3. 특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건(원안가결 3건)

소관	의 안 명	심사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 2018 회계연도 결산	원안가결
	2.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원안가결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4. 위원회별 부대의견 및 시정요구사항

가. 의회운영위원회

1) 2018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 의회사무국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예산 대비 5.5%로 전년도보다 3.08%가 증가하였음.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업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취소 등의 사유로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요구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나. 기획행정위원회

1)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병역명문가 가족의 경우 증명자료가 없어 명문가 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시행규칙에 병역명문가 가족카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사용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2)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중요소송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하는 만큼 금번 시화호 공유수면 점용료 소송은 전례 없는 큰 소송이니 이에 적극 대처하기 바람.

3)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기본인력계획의 수립이나 조직진단 및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니 만큼 더 세심히 살피고 전문적인 위원회 구성 과 심의를 통해 안산시 조직 운영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4)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 의회 동의절차를 준수 하지 않고 협의회 가입이 이루어진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늦게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절차 준수를 잘 하기 바라며, 향후 이런 사항들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5) 2018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 세입분야에서는

과거 징수실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미수납액 비율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체납세 발생의 억제와 징수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함.

○ 세출분야에서는

매년 예산액과 실제 집행된 지출액의 차이를 점검 분석하여 집행과정 상의 문제인지,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예산

을 편성하고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또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이월사업은

실제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설정 하여야 하나 예산만 설정한 상태에서 사업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임.

사업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당해 연도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실행 가능한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바람.

6)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정요구사항)

- 기금은 기금용도에 맞는 적절한 운용과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바람
-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예탁금 이자 수익만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최근 발생하는 각종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재난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난관리 기금 운용을 요구함.

7) 총평(시정요구사항)

- 제25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결산검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회 전 집행부에 몇 가지 개선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결산시 지적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하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부서에서는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부서에선 자체예산 심사시 반영하여 심사하기 바람.
- 추경예산에 시급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여 신뢰를 잃은 사업도 있음. 부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시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기 바람.
- 그리고 각 부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현저히 낮은 목표치 설정으로 실적을 부풀려 달성율을 높여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올바른 성과지표 설정이 아니고 달성율 만을 위한 성과지표임. 향후에는 성과지표의 목표를 너무 과소하게 설정하여 결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기를 요구함.

- 또한 달성을 표기방법에서도 부서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있으며 양 구청에서는 업무는 동일한데 측정산식이 서로 다르니 이를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추진 후 잔액 및 사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고 있으나 그전 추경이라도 반납하여 타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전체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1)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사항)

- 어린이집 인건비지원기준을 참고하여 만65세까지만 인건비지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

2)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민간위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5년간 실시하되 위탁사업자 선정 시 심사기준을 좀 더 보완하고 아이돌봄 사업시행 시에는 위탁업체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기 바람.

3)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상록장애인복지관 증축 이후 늘어나는 공간활용과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용추계를 정확히 작성하고 추진하기 바람.

4)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의견제시)

-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사업에 안전성과 향후 활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청회가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는 하나 동사업에 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에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해주시기 바람.

5) 2018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 세입예산 편성철저

- 세입예산의 징수결정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고 과태료와 그외수입은 세입과 징수실적을 정확히 추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 성과지표작성 철저

- 성과지표설정시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은 현실에 맞게 작성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관리 철저

-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용처리 예산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회계연도내에 정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대비 과도한 시비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 일부부서에서 예산액 대비 40%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판단되니 각 항목별 지출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되, 관례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함.

6) 2018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정처리요구사항)

- 기금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하고 매년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관리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

라. 도시환경위원회

1)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갈대습지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습지시설 내에 매점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향후 설치·운영 시 매점 구역 내에서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습지 탐방 시 음식물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관련 내부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바람.
- 안산갈대습지 내 시설물 보강과 다양한 체험·교육 콘텐츠 확보를 통해 갈대습지가 시민들에게 열린공간, 체험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기 바람.
- 현재 안산시의회에서는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설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성시와의 관리 경계 설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람, 미개방지역 관리 권한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여 준비하기 바람.

2)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택시쉼터는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써 사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 방침 수립하고, 운수 종사자들의 과로 운전으로 인한 이용시민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가 조성·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소수의 여성운전자들도 시설을 마음놓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한, 대중교통과에서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확립될때까지 시설을 직접운영하고, 향후 위탁 운영 검토시에도 위탁기관과 범위 결정, 관리·감독 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기 바람.

3) 2018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

- 예산의 성과지표는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여야 하나, 다수의 정책사업목표를 단순 예산 집행률 또는 추진 횟수 등으로 설정하여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니 정책사업 목표 설정에 대한 전반적이 재검토를 실시할 것.

○ **성인지 예산 수립 및 결산 관리 철저**

-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중 다수가 행사 참가자의 성별 참여 비율, 위원회 구성의 성별 비율, 만족도 조사 참여 성별 비율 등 성과 달성 가능한 단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각 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 및 예산법무과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과 실질적인 성과목표 선정, 효과분석, 향후 개선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시설공사 신속 집행 관리 철저**

-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서의 업무 특성상 대규모 토목·건축공사가 많은 실정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도비 교부 지연,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련기관 협의와 시비 우선 집행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 **사회간접 기반시설 확충 예산 확보 및 집행 철저**

- 사회간접 기반시설 사업은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시의 기능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원사업 및 행사성사업의 예산 규모 축소를 통해 사회간접 기반시설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시정요구사항)

○ **예비비 지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및 절차 준수**

- 공원과에서는 2018 폭염 현안사항 긴급대응을 사유로 일반예비비 4천8백여만원을 화랑유원지 야외 간이수영장 설치 및 관리비로 사용한 상태로, 예비비 본래의 집행 목적은 재해·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의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으로써,
- 2018년도 혹서기의 유례없는 폭염으로 재난대처 수준의 피해방지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할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나 쿨링 포그 설치와 같은 폭염 대비 시설 설치가 아닌 유희 시설에 유사한 야외 간이수영장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운영에 과도한 탄력적 운영 결과로 판단되니,
-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하고, 부득이 예비비 집행이 필요한 긴급 상황 발생시 사전 의회 보고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매년 반복되는 기상 상황에 따른 재난대처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할 것.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 첫째,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및 미 수납액 발생 최소화 노력

-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본예산 대비 최종 수납액은 31.5%가 증가하는 등 세입판단이 정확하지 않음. 세입은 과거 징수실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미 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 둘째, 불용액 발생 사유 분석 및 합리적 예산 편성과 집행 철저

- 세출분야에서는 매년 예산액과 실제 집행된 지출액의 차이를 점검 분석하여 집행과정 상의 문제인지,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 특히, 시급한 사업으로 어렵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여 신뢰를 잃은 사업도 있는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한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후 잔액 및 사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을 지양하고, 제2회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예산에 시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람.

○ 셋째,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 2018년 예산대비 세출 집행율은 59%로 41%가 불용 또는 이월되었음.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비 예산에 대하여는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 사업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당해 연도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가능한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바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일부사업은 잦은 사업 변경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함. 사업 추진 시에는 시기의 적정성과 사업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 넷째,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

- 예산의 성과지표는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나, 다수의 정책사업목표가 성과지표를 단순 지표로 설정하거나 지나치게 과소하게 설정하여 달성율에만 치중하고 있음.
- 성과지표의 달성율 표기방법이 부서마다 다르고, 특히 양 구청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산식이 서로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 합리적

으로 조정하기 바라며, 정책사업 목표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또한 성과지표는 예산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보고·논의된 사항들로서 성과지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의회 보고와 같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비하기 바람.
- 다섯째,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관리 철저
 -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용처리 예산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회계연도 내에 정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대비 과도한 시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 여섯째, 성인지 예산 수립 및 결산 관리 철저
 -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중 다수가 행사 참가자의 성별 참여 비율, 위원회 구성의 성별 비율, 만족도 조사 참여 성별 비율 등 성과 달성 가능한 단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각 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 및 예산법무과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과 실질적인 성과목표 선정, 효과분석, 향후 개선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일곱째, 시설공사 신속 집행 관리 철저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특성상 대규모 토목·건축공사가 많은 실정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도비 교부 지연,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련기관 협의와 시비 우선 집행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 여덟째, 사회간접 기반시설 확충 예산 확보 및 집행 철저
 - 사회간접 기반시설 예산이 매년 축소되고 있음. 사회간접 기반시설 사업은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시의 기능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원 사업 및 행사성사업의 예산 규모 축소를 통해 사회간접 기반시설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아홉째,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철저
 -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 및 사업별 조서중 단위가 미 기재 되었으며, 결산서 첨부 서류 (14)-2 이월사업별 현황에 이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월사유를 미 기재하는 등 결산서 작성이 소홀하니 추후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열째, 순세계 잉여금 불일치 내역 규명 및 시정
 - 일부 기타특별회계(교통사업, 의료급여, 쓰레기 매립장, 발전소 주변특별회계) 결산에서 2017년 발생 순세계잉여금과 2018년 순세계잉여금 실제 수납액이 차

이가 있으니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열한째,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마이너스) 원인규명 및 시정

- 대부해양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초지동의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였는데 총괄부서인 회계과와 해당 부서에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열두째, 회계연도 결산서식 개선 방안 모색

-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사업별 예산·성과예산 제도와 연계한 결산체계 개편으로 사업별 조서 상 ‘목별’ 항목을 삭제하고 첨부서류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통합하여 작성되었음.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결산서에 통계과목인 목별 조서를 첨부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결산서식 개선 건의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시정요구사항)

○ 첫째, 기금 결산안 및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철저

-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기금결산보고서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수입에는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작성하고 지출에는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는 수입과 지출 내용이 법령과 상이하고,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지출에 불용액을 작성하지 않고 결산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작성하기 바람.

○ 둘째,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

-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바람.
-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예탁금 이자 수익만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이라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셋째, 재난관리 기금 확보 및 운용 철저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최근 발생하는 각종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재난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 기금 확보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정요구사항)

○ 예비비 지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및 절차 준수

- 공원과에서는 2018 폭염 현안사항 긴급대응을 사유로 일반예비비 4천8백여만

원을 화랑유원지 야외 간이수영장 설치 및 관리비로 사용한 상태로, 예비비 본래의 집행 목적은 재해·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의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으로써,

- 2018년도 혹서기의 유례없는 폭염으로 재난대처 수준의 피해방지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할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나 쿨링 포그 설치와 같은 폭염 대비 시설 설치가 아닌 유희 시설에 유사한 야외 간이수영장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운영에 과도한 탄력적 운영 결과로 판단되니,
-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하고, 부득이 예비비 집행이 필요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의회 보고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매년 반복되는 기상 상황에 따른 재난대처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기 바람.